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60회 임시회(2023. 2.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23-5
----------	------

2023. 2. 15.
전문위원 신준호

1. 제출경위

- 가. 제 출 자 : 마포구청장(맑은환경과)
- 나. 제 출 일 : 2023. 1. 27.
- 다. 회 부 일 : 2023. 1. 31.

2. 제출이유

분뇨수집·운반업 대행업체의 자격 중 ‘사회적 기업’ 규정을 삭제하고 대행 기간을 조정하는 등 대행업체 운영 및 관리감독의 효율화 제고를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됨.

3. 주요내용

- 가. 대행업체 대행기간 조정(3년→2년): 안 제9조제3항
- 나. 사회적기업인증 조항 삭제: 안 제9조제5항
- 다. 업무 담당이 정확하지 않은 용어 변경: 안 제9조의5제4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41조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다. 기타
 - 입법예고 : 2022. 12. 29.~ 2023. 1. 18.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배경

- 본 조례는 제219회 임시회(2018.4)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근거로 공공대행사업의 사회적 목적과 공익실현에 기여하고자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에 사회적기업 지정 또는 인증을 받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정하였으나, ‘민선8기 마포구청장직 마포인수위원회’ (이하 ‘인수위’ 라고 한다)에서 대행업체 선정 과정의 소송 사례와 지역 사회 공헌차원의 기부금을 받는 행위가 기업에 부담을 가중한다는 사유로 불필요한 제도의 폐지 차원의 조례 개정을 제안¹⁾함.

나. 주요 조문 검토

- 안 제9조 제3항 대행업체 대행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였는데, 그동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 민간위탁기간 3년 이내 규정에 따라 준용하였던 사항을 별도로 조정하는 사항임.
- 안 제9조제5항 대행업체의 계약 조건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의무에 대한 책무에 반하는 사항임.
- 기타 조항은 조례의 용어를 명시적 차원에서 개정하는 사항임.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의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는 민선7기 정화조 대행업체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또는 인증 추진정책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1) 민선8기 마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 활동백서 p.172

근거로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계약조건에 포함된 사항을 ‘인수위’에서 기업의 과도한 규제로 판단·권고하여 삭제 개정하려는 것임.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적 아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수위’에서 삭제 권고하는 이유인 기업의 과도한 규제로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참고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주요 요건으로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의무화와 영업이익의 근로자 임금인상 등의 근로조건 개선, 투명경영 활동 등이 있음.
- 대행업체 대행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과 대행업체의 관리감독의 강화가 대치되는 사항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참고로, 제207회 임시회(2016.11)에서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개정하였음.
- 당초 대행기간 설정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포구의 모든 민간위탁사무의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준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조정한다면 타 위탁 및 대행사무의 계약기간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어느 것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 계 법 령]

「하수도법」

제41조(분뇨처리 의무) 판례과태료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벽지 등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③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⑤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